

**자동차 부품제작 및 수입을 위한  
부품제작자등 등록 신청 매뉴얼**

**2021. 7**

**국 토 교 통 부  
자 동 차 정 책 과**

**차 례**

1. 부품제작자등 등록이란? .....	3
2. 부품제작자등의 의무 .....	3
3. 부품제작자등 등록 절차 .....	4
1) 업무흐름도	
2) 소요기간	
3) 신청방법	
4. 부품제작자등 등록 구비서류 .....	5
5. 변경신청 .....	5
6. 재발급 신청 .....	5
7. 기타 .....	6
1) 등록증 유형별 분류	
2) 부품 자기인증 대상	
3) 부품제작자등 등록증 수령	
8. 부품제작자등 등록 신청서 .....	7
9. 부품제작자등 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 .....	8
10. 부품제작자등 등록 관련 규정 .....	10
<참 고 1> 제출서류 작성요령 .....	14

## 1. 부품제작자등 등록이란?

- 자동차 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을 부품자기인증이라 하며,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수입하여 부품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를 부품제작자등이라 합니다.

부품제작자등 등록이란 부품자기인증을 위하여 시험시설을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시험시설을 갖추지 못한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2. 부품제작자등의 의무

- 1) 부품제작자등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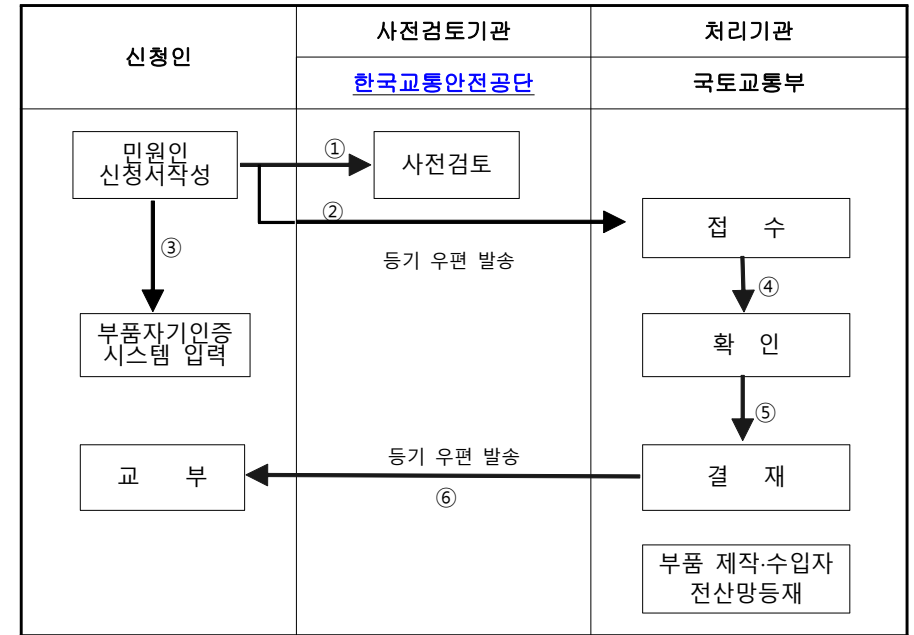
▶ 자동차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2) (변경) 부품제작자등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확인한 결과 등록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3. 부품제작자등 등록 절차

### 1) 업무흐름도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전검토를 요청하거나 '부품자기인증 시스템'에 신청서를 입력하려는 경우 세부사항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문의 (담당자전화: 031-369-0370)

### 2) 소요기간

- 신규신청 : 15일, 변경·재발급 신청 : 7일
- \* 근무일 기준

### 3) 신청방법 : 우편 접수

- 우편번호 및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부품제작자등 등록 담당자 앞

※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는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부품제작자등 등록 구비서류

- ①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별지24호의2 서식 p.7 확인, 작성방법은 p.8 확인)
- ②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계획에 관한 서류
- ③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확보내역(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
- ④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 ⑤ 제작결함 시정 계획서(자동차관리법 제31조 내용 포함)
- ⑥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 5. 부품제작자등 변경 신청

\*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법인명칭 및 주소, 대표자 성명,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해당시설 사용계약의 변경을 포함)을 변경할 경우

- ① 부품제작자등 등록신청서(별지24호의2 서식 p.7 확인, 작성방법은 p.8 확인)
- ② 부품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 ③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6. 재발급 신청

- ① 제작자등 등록신청서(별지18호 서식 p.18 확인, 작성방법은 p.19 확인)
- ②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 원본(해당되는 경우만)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7. 기타

〈 등록증 유형별 분류 〉

국내 제작조립자

수입자

〈 부품자기인증 대상 부품 〉

1. 브레이크호스
2. 잠식안전띠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전조등)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6. 장유리
7. 안전삼각대
8. 후부반사판
9. 후부반사지
10. 브레이크라이닝
11. 휠
12. 반사띠
13.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 2) 부품제작자등 등록증 수령

- 등록증은 제작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등록 신청받은 주소지(신청서에 작성한 주소(또는 사업장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제3항에 따라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변경신청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3) 자동차 부품 제원통보 및 부품자기인증시스템 담당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담당 : 031-369-0370

###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제작자명(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최초 제작자	상호(법인명)	(※수입자만 해당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제작구분	[ ] 국내 제작·조립자 [ ] 수입자	
자동차부품명(생산자)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항·제3항 및 제40조의6제4항에 따라

- [ ] 위와 같이 부품제작자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위와 같이 부품제작자등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위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등록	1.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계획에 관한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3.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변경	1. 법인 명칭 및 주소의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2. 대표자 성명의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3.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변경(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증빙하는 서류	
	재발급	1.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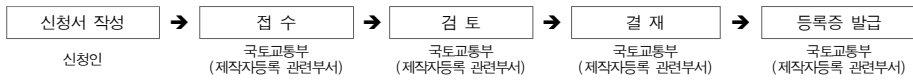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8. 부품제작자등 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

변경등록 및 재발급 신청도 반드시 모든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 1) 신청인

#### ① 제작자명(법인명)

-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증 상 명칭 기재

#### ②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 번호 기재

#### ③ 대표자 성명

- 법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인 경우 개인 성명 기재

#### ④ 생년월일

- 법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 ⑤ 주소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 기재  
(제작자등으로 등록하는 신청인의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2) 최초제작자(수입자만 기재)

#### ① 상호(법인명) : 외국의 최초 부품제작자명을 기재(영문)

#### ② 주소 : 최초제작자 소재지 영문 기재(원제작자의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3)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 기재

### 4) 제작구분(제작구분에 따라 제작자등 등록증 각각 발급)

- ‘국내 제작·조립자’ 또는 ‘수입자’ 중 해당하는 경우에 반드시 체크

### 5) 자동차부품명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 대상 명칭 사용(p.6 참조)

- \* 생산자명 기재(수입의 경우 최초 부품제작자 명)

### 6) 신청인

- 법인인 경우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과 인장 또는 서명날인, 사업자 및 개인은 대표자 인장 또는 서명날인

### 7)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제작자등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작자등 등록 신청서’ 하단의 동의를 통해 동의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10. 부품 제작자등 등록 관련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동차관리법’으로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1.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

제작자들은 통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⑦ 성능시험대행자는 제6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떼는 자
-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 15의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및 대체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 20의2.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20의3.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20의4.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20의5.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20의6.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의4(부품자기인증)** 부품제작자들은 그 자동차부품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제40조의5(부품제작자들의 등록)** ① 부품제작자들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계획에 관한 서류
2.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확보내역(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3.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부품제작자들은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명칭 및 주소의 변경
2. 대표자 성명의 변경
3.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변경(해당시설 사용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제40조의6(등록증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변경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부품제작자등록번호 변경없이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7(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① 부품제작자등은 부품자기인증을 위하여 별표 4의3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0조의8(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①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자동차부품등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부품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동차부품의 제원표

2. 자동차부품의 외관도

3. 그 밖에 자동차부품의 기능설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원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제작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원의 통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9(부품자기인증의 표시)** ①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부품(포장재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표시할 것

4. 인증표시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①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3호의3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 자동차부품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위한 연간계획의 내용 및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정·방법·인력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의 조사방법, 자료제출, 결과보고,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참 고 1>

### <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계획에 관한 서류 >

-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경우 제작·조립 단계 설명 및 표 형태의 생산계획
-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표 형태의 수입계획, 제품의 상세 이미지 및 세부설명

예시)

제작 자명	제 품 명	품 번	00년 1분기	20년 2분기	20년 3분기	20년 4분기	총 계
00산업	123abc	a-123	50	50	50	50	200
"	abc123	a-124	100	100	100	100	400
.	.	.	.	.	.	.	.
.	.	.	.	.	.	.	.
총 계			150	150	150	150	600

### < 시험시설 사용계약서 >

- **법정양식은 없으며**, 계약일 및 계약기간, 계약기간 만료 후 조치 사항 및 사용 장비(자기인증대상 부품의 시험 사용장비명) 등 명시될 것

\* 시험시설을 갖춘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확인서 제출

### < 기술인력 확보내역 >

- **법정양식은 없으며**, 회사 조직도 등의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부서 및 기술인력 표기(성함, 직책, 유선번호 등) 입력될 것

### < 제작결합 시정 계획서 >

- 부품 자기인증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합 시정** 등에 대한 계획 제출

\* 내부적으로 공급품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캡처화면 등 제시할 것